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추가약정서(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)

현 행	개 정(안)
제2조(용어)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'고가주택'이란 '시가 9억원 초과 주택'을 말합니다. 2. (생 략)	**제2조(용어)** ----------. <삭 제> 1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주택취득 등 제한) 채무자 및 그 배우자는 본 대출기간 동안 고가주택을 취득주2)하거나,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습니다. 주2) (생 략)	**제4조(주택취득 등 제한)** ----------2주택 이상을 취득주2)하거나, ----------. 주2) (현행과 같음)
제6조(의무위반이 아닌 경우) 제 5조에 따라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단, 고가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 1. (생 략)	**제6조(의무위반이 아닌 경우)** ---------- 2주택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	**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** ----------.

현 행	개 정(안)
1. 제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	1. ---------- 2주택 ----------
제9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[주3)]의 주택 관련 대출[주4)]이 제한됩니다. 단, 제 8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 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. 주3), 주4) (생 략)	**제9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** ----------. 주3), 주4) (현행과 같음)
1. 제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	1. ---------- 2주택 ----------